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친환경벌채 지원,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제도,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근거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안 제13조의2·3 및 관련 별표2의5 신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통지의 방법과 납부기한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와 관리업무대행 기관 등을 규정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수집된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친환경별채 세부 지원기준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안 제69조 개정)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의 범위 및 절차, 반환 규정 등 기준을 마련함.

마. 입목별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 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의 면적 기준, 절차·방법과 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기관을 점검·감독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바. 입목별채등의 심의위원회의 제도를 도입(안 제42조의6 신설)

별채 또는 굴취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3조의3, 제31조의2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경우
 2. 관리업무대행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관리하여 산림경영계획 수립 또는 실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
-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수집·활용 등) ① 산

림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를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이하 “친환경벌채”라 한다)의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임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목소유자)로서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벌채를 실시한 자. 다만, 임목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다.
 2. 예상되는 수익금 : 임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3. 지원금 지급대상 임목축적의 최대 한도 : 벌채구역 내 총 임목축적의 100분의 30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 5만제곱미터
- ② 지원대상자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벌채를 실시한 해당연도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③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벌채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

를 실시하여 친환경별채 지원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는 법 제36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 별채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에 대한 입목별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와 법 제2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3(입목별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규모·전문기관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별채 또는 굴취 구역 면적 10만제곱미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산림기술인회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입목별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이

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지진, 해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입목벌채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6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보관할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종이 및 전자도면 포함)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제42조의4(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기준·방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를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업무의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의 승인에 대한 통지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산사태, 숲가꾸기·벌채, 개발행위허가 이력 등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의 신청을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감독 등) ①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
4. 사전타당성조사 자료의 보존 현황
5.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점검·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점검·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벌채 또는 굴취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심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며, 지방산림청은 지방산림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1. 산림경영·산림자원조성·산림재해·산림생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관련 분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산림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의 신청을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7항”을 “법 제3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지나 임도”를 “사업지 또는 임도나 지원금을 받은 산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은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벌채의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경우 : 남겨진 입목에 대해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71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권한

별표 2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별표 2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입

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해서는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②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제1항 · 제4항”을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제1항 · 제5항”으로 한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기준(제1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되는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 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종묘생산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라.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90일을 말한다)·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 마.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5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text{과징금 부과금액} = \text{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times \text{업무정지 일수} \times 0.1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등)</u> ① <u>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u> ② <u>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u> ④ <u>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u>

<신 설>

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행정기본법」 제29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 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
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
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
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
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법 제23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관리업무대행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재해예방 등 긴급히

<신 설>

조치해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하지 않은 경우

2. 관리업무대행의 사업실적과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관리하여 산림경영계획 수립 또는 실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수집·활용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이하 “산림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재해,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를 위한 산림위성의 개발

2.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운영

3.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신 설>

위한 연구개발

4.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5.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생산, 분석 및 배포

7. 산림위성 관측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자료 검증 및 개선사업

8. 그 밖에 산림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이하 “친환

경벌채”라 한다)의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로서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벌채를 실시한 자. 다만, 입목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다.

2. 예상되는 수익금 :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3. 지원금 지급대상 입목축적의 최대 한도 : 벌채구역 내 총 입목축적의 100분의 30

4.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 면적의 최저 한도 : 5만제곱미터

② 지원대상자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벌채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으려
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지원신청서”라 한
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
항 후단에 따라 별채 허가 내용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
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
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
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산
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별채 지원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지
조사는 법 제36조제1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

<신 설>

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 별채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남겨진 입목에 대한 입목 별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와 법 제2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3(입목별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규모·전문기관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별채 또는 굴취구역 면적 10만 제곱미터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을 말한다.

1.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
회

2.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
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② 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
조사(이하 “사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을 위
하여 긴급히 산림사업을 하여
야 하는 경우

2. 산사태, 바람, 비, 눈, 지진, 해
일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

3. 산불진화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피해
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신 설>

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입목벌채등을 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6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보관할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벌채등의 사업계획서

2. 입목벌채등의 현황 도면(중
이 및 전자도면 포함)

3.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서

제42조의4(사전타당성조사의 절

차·기준·방법 등) ① 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
장이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신청서
를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33조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
른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업무의
신청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의

승인에 대한 통지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산사태, 숲가꾸기·벌채, 개발행위허가 이력 등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의 신청을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보완 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

<신 설>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
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사전타당성조사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사전타당성조사 전문
기관의 감독 등) ① 법 제36조
의4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사
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감독할 수 있다.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
용에 관한 사항
2. 사전타당성조사 예산 및 결
산에 관한 사항
3.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
황
4. 사전타당성조사 자료의 보존
현황
5.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점검·감독을 위해 산림청장
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점검
·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 설>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6(입목별채등의 심의위
원회)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입목별채등의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벌채 또는 굴
취구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 심의를 실시해야 한
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
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
며, 지방산림청은 지방산림청장
이 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
람이 된다.

1. 산림경영·산림자원조성·산림재해·산림생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관련 분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그 밖에 산림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등의 신청을 30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9. (생략)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

 ---.

1. ~ 6. (현행과 같음)

7. -----

 --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4항-----

8.·9. (현행과 같음)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 -----

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 -----

----- 사업지 또는 임도나
지원금을 받은 산림은-----

-----.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경우 :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② (생략)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별채의 지원금을 받은 산림의 경우 : 남겨진 입목에 대해 입목벌채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와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1호·제2호-----

----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은 벌채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④ ~ ⑦ (생략)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권한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044